서산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

檢 討 報 告

검토자 :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 영 신

1. 提出者: 瑞山市長

2. 提出日字 : 1997. 6. 17

3. 提案理由

o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(대통령령 제15,267호, '97. 2. 4)됨에 따라 농촌지도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.

4. 主要骨子

o 서산시농촌지도소의 설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1조).

o 지도소의 업무로서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.조정.농업인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.지도, 농촌생활 개선등등 농업 진반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토록 규정함 (안 제2조).

o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(안 제6조).

5. 檢討意見

o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(대통령령 제15,267호 '97. 2. 4)됨에 따라 농촌지도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함.